

[] 대규모점포 [] 휴업 [] 폐업 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[illegible]

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(준)대규모 점포의 []휴업 []폐업을 신고합니다.

의
한
도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